

목 차

주주총회소집공고.....	1
주주총회 소집공고.....	2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3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3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3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3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3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5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5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5
III. 경영참고사항	6
1. 사업의 개요.....	6
가. 업계의 현황	6
나. 회사의 현황	7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10
□ 재무제표의 승인.....	10
□ 정관의 변경.....	47
□ 이사의 선임.....	49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49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50
※ 참고사항	50

주주총회소집공고

2019 년 3 월 7 일

회 사 명 : 디와이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조 병 호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362번길 36(남촌동)
(전 화) 032 - 810 - 4100
(홈페이지) <https://www.dy.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기 획 실 장 (성 명) 김 진 호
(전 화) 032 - 810 - 410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1기 정기주주총회)

1. 일시 : 2019년 3월 22일 (금) 오전 9시

2. 장소 :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362번길 36(남촌동) 당사 5층 시청각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의안 : 제41기(2018.01.01~2018.12.31) 재무제표(별도 및 연결)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구분	성명	주요약력	추천인	최대주주와 관계	당해법인과 거래내역	비고
사내이사	조 병 호	(현) 디와이 대표이사	이사회	본 인	해당사항 없음	재선임
사내이사	김 지 현	(현) 디와이 사장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신규선임
사외이사	이 형 모	(현) 재외동포신문 대표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신규선임

제4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이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 요청을 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5. 기타

가. "경영참고사항" 및 "주주총회목적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1항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지점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주총회 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이근모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	2018.02.07	- 제40기 재무제표(별도 및 연결) 및 영업보고 승인의 건 - 제40기 현금배당 결정의 건 - 경영임원 선임 및 업무분장, 보수 결정의 건	찬성
2	2018.03.08	- 제40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찬성
3	2018.03.23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등기임원 보수 및 업무 분장 결정의 건	찬성
4	2018.10.19	-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
5	2018.11.16	- 경영임원 신규 선임의 건 - 이사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
6	2019.01.21	- 경영임원 보수 및 업무분장 결정의 건 - 사내 일부 규정의 개정의 건	-
7	2019.02.07	- 제41기 재무제표(별도 및 연결) 및 영업보고 승인의 건 - 제41기 현금배당 결정의 건	-

(*1) 2018.05.25 이근모 사외이사는 중도사임하였으며, 최초 도래하는 주주총회일에 사외이사 신규선임 예정임.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해당사항 없음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고
사외이사	1	750	10	10	-

(*1)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인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금액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당해 사업년도중 발생한 거래는 없습니다.

다만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기일 전일까지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당사(분할후존속회사)와 디와이과워주식회사(인적분할신설회사) 및 디와이오토주식회사(물적분할신설회사)가 모두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분할승계된 채무보증건은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당해 사업년도중 발생한 거래는 없습니다.

다만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기일 전일까지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당사(분할후존속회사)와 디와이과워주식회사(인적분할신설회사) 및 디와이오토주식회사(물적분할신설회사)가 모두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분할승계된 채무보증건은 없습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 지주사업

1. 산업의 특성

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크게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순수지주회사는 어떠한 사업활동도 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지배하는 자회사들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며, 사업지주회사는 직접 어떠한 사업활동을 함과 동시에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입니다. 지주회사로의 전환은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증대시켜 시장으로부터 적절한 기업가치를 평가 받음으로써 주주의 가치를 높이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케 함으로써 책임경영을 정착시키며, 사업부문별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체제를 확립하여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역량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위험의 분산 등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위해 회사는 자회사의 지분율을 일정비율(상장사 20%, 비상장사 40%) 이상 보유해야 하고, 부채비율은 200%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제한의 준수여부를 매년 공정거래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 산업기계사업부문

1. 산업의 특성

세차기 부문은 차량등록 및 운영 여부, 주유소 투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간적 제약과 설치 시 공사를 수반하는 특성이 있어 자금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유류사업 경기 흐름에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장차 부문은 차량과 연관한 장비의 장착을 통해 운송 및 시공, 건설현장 등에서 운반기계와 건설기계 등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합니다. 따라서 이윤 및 가치를 생산하는 자본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프카 부문은 골프장에서만 활용되는 업종 특성상 영업 또한 골프장 관련 제품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으며, 골프장과는 지속적인 업무 연관성을 가진 특성이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2018년 12월말 현재 국내의 주유소는 약 12,164개소, 충전소는 약 2,700개소가 운영 중이며, 그 중 휴업주유소는 약 584개소, 폐업주유소 약 223개소로 운영난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꾸준한 신차 출시 등의 효과로 세차기 부문은 현재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장차 부문은 건설경기의 등락에 영향을 받는 특성상 관련 경기의 변동에 따라 성장성에 영향이 있지만, 기술의 발전 및 편의성의 추구, 인력 절감 등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골프카 부문은 신규 수요보다는 교체 수요 중심의 시장이며 골프장 경기 악화로 인해 내구연한이 늘어나고 있어 시장은 정체가 예상되지만 연간 2500대 전후로 시장규모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세차기 부문은 교체 수요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 시장은 현재 포화상태로 신규투자가 위축되는 반면 교체 시장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투자 증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장차 부문은 건설 및 자동차·운송산업 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경기변동 또한 연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프카 부문은 경기 변동에 따라 신규 골프장 건설기간의 편차가 발생하며, 교체 수요의 경우에도 골프장 내장객의 추세에 따라 교체 수요에 대한 규모가 달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4. 계절성

세차기 부문은 계절적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1분기는 계절적 비수기이며, 2분기는 투자 활성화로 인한 증가, 3분기는 기후요인에 따른 감소, 4분기는 투자 회복세와 연동하여 증가하는 계절성을 보입니다. 특장차 부문은 특성상 하절기 및 동절기의 경우 일시적인 수요 감소 및 건설경기와 동반한 경기변동의 특성을 가집니다. 골프카 부문은 봄과 가을 시즌에 성수기를 맞이하는 골프의 계절적 특성과 맞물려 봄, 가을 시즌에 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계절적 수요 변동의 특성이 있습니다.

5. 시장의 안정성

세차기 부문은 국내시장의 성장 한계로 인하여 신규 수요 창출보다 교체 또는 틈새 수요로써 현상유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외시장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향후 큰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장차 부문은 건설업, 운송업 등의 발전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요 확보가 가능한 시장입니다. 골프카 부문은 시장 경기에 따른 신규 골프장 감소로 신규수요는 감소했으나 기존 골프장의 지속적인 교체 수요가 발생되어 현재까지의 시장규모는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경쟁상황

세차기 부문은 한정된 국내 시장 여건과 투자 위축까지 겹쳐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게 되었으며, 수익구조 또한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또한 해외시장 역시 글로벌 대기업과 경쟁을 하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당사는 고객요구에 만족하는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 우수한 품질로써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점진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장차 부문은 제품 특성상 신규 아이템의 개발과 시장 진입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 소요되기에 진입장벽이 높은 편입니다. 이에 국내시장은 3개 내외의 기업이 경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외시장도 이와 유사하게 적은 수의 선점기업이 경쟁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골프카 부문은 품질 경쟁과 가격경쟁을 통해 당사와 수입업체가 점유율 확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7. 경쟁요소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단점

세차기 부문은 적시에 고객 요구사항을 반영한 제품 출시를 통해 시장의 선점 지위를 확보하고, 차별화된 디자인과 전국적 서비스망 구축 등이 강점이며, 약점으로는 내수 위주의 편중된 판매 구조로 환경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특장차 부문은 제품의 핵심부품인 유압실린더는 국내외적으로 품질과 신뢰성을 검증받은 디와이파워주식회사의 유압실린더의 적용으로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경쟁사의 저가 판매 등이 일시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골프카 부문은 가격, 성능 및 사후관리 부분이 큰 경쟁 요소로서 당사는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통한 가격 경쟁력 및 체계화된 품질 관리 시스템, 골프장 관련 산업 경험이 풍부한 총판 대리점의 광범위한 영업망 등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 지주사업

당사는 2014.12.03일을 지주회사 전환 신고일로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제출하였으며, 2015.02.16일 전환 신고일 현재 지주회사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심의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해당 지주사업의 주주이익은 자회사 지분에 대한 배당수익, 임대수익, 브랜드로열티, 경영자문수수료 및 업무위탁수수료 등으로 자회사 경영활동 및 영업성과에 따라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18년 지주사업의 매출은 105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당해 사업년도말 기준 계열회사 계통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회사	피투자회사	DY	DY POWER	DY AUTO	Dongyang Mechatronics Jiangyin	DY POWER INDIA	Dongyang Mechatronics China	Dongyang Mechatronics Yancheng	DY AUTO INDIA	DY AUTO MEXICO	메이치메스 테크놀로지	나누리	DY AMERICA	DY JAPAN
대주주 등		40%	0%	0%	0%	0%	0%	0%	0%	0%	0%	0%	0%	0%
계열회사		4%	3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9%	75%	100%	100%
	DY	4%	38%	100%									100%	100%
	DY POWER				100%	100%								
	DY AUTO						100%	100%	100%	100%	99%	75%		

■ 산업기계사업부문

산업기계사업부문은 전년대비 5% 감소한 972억원의 매출을 달성 하였습니다. 내수 부문에서는 전년대비 9% 감소한 75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수출 부문에서는 전년대비 12% 증가한 222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세차기 부문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주유소 간 가격경쟁 심화로 인한 이익감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출시한 고품격 프리미엄세차기의 지속적인 판매 확대로 수도권 및 경기도 지역의 시장을 주도하였고, 정유사 주유소 내에 세차 특화 SYSTEM 도입으로 세차 유료화에 초점을 맞춘 판매전략과 고속도로휴게소 및 농협 등의 틈새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여 판매를 확대한 결과입니다. 2019년 시장은 주유소의 유류 마진 감소 및 경쟁 심화로 이익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전략적 모델을 출시하여 시장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신속한 A/S 대응력으로 교체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판매할 계획입니다.

특장 부문은 콘크리트 펌프카의 경우 2018년 북미 시장 안정화, 대양주 달러 육성을 통해 수출은 증가하였지만, 내수는 2018년 하반기 이후 건설경기 침체 영향으로 판매가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은 안전기능을 강조한 영업 전략을 통해 내수 판매 확대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한 수출 시장을 확대하여 판매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직진식 크레인은 2018년 4월 안전검사 2년 유예 및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하반기부터 영업용(7톤, 20톤) 수요가 대폭 감소되었지만, 자가용 시장 판매 확대를 위한 고정식 전용 크레인 출시와 안정적 시장 진입으로 5톤급 M/S를 확대하였습니다. 2019년 수출은 러시아 등 기존 시장 방어와 달러 재편을 통하여 판매를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며, 내수는 변화되는 시장과 고객 니즈에 맞는 제품을 출시하여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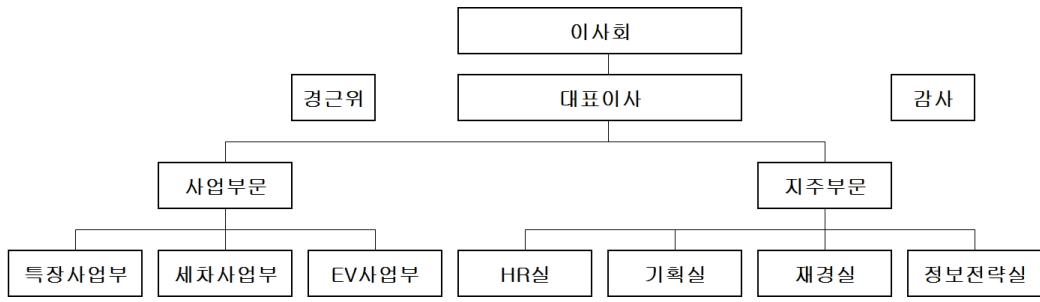
골프카 부문은 전반적인 내수 경기 하락으로 인하여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으며, 신규 골프장 보다는 기존 보유 골프카의 교체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2018년 실적은 탁월한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고객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전년 대비 50% 이상의 성장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향후에도 판매사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고객 만족을 극대화해 나아갈 것이며, 유틸리티 등 유관 사업으로의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사업부문	주요재화 및 용역	매출액(억원)	비고
지주사업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105	-
산업기계사업부문	콘크리트 펌프카, 자동세차기, 카고크레인, 골프카 등 일반기계, 건설기계, 특장차 제조 및 판매업	972	-

(*1) 상기 매출액은 2018.12.31일 기준 당사 별도재무제표 기준 수치임

(2)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상세 내용은 'Ⅲ. 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을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별도재무제표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별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별도 대 차 대 조 표 (재 무 상 태 표) >

제 41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 40 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41 기	제 40 기
유동자산	49,951	57,976
현금및현금성자산	12,978	20,877
기타금융자산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5,879	15,546
기타자산	1,103	1,658
재고자산	19,991	19,862
당기법인세자산	-	33
비유동자산	186,349	183,998
기타금융자산	1,369	741
종속기업투자	151,821	151,82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49	375
기타자산	27	160
유형자산	23,473	23,771
무형자산	3,109	1,139
이연법인세자산	6,301	5,991
자 산 총 계	236,300	241,974
유동부채	9,084	13,218
매입채무및기타채무	5,541	7,721
차입금	775	1,088

기타부채	2,763	4,409
기타금융부채	-	-
당기법인세부채	5	-
비유동부채	4,518	3,002
기타금융부채	-	-
차입금	387	1,162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8
총당부채	927	512
순확정급여부채	3,204	1,300
부 채 총 계	13,602	16,220
자본금	13,160	13,160
기타불입자본	91,429	91,429
이익잉여금	118,109	121,165
자 본 총 계	222,698	225,754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36,300	241,974

(2) 별도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 별 도 손 익 계 산 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41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40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41 기	제 40 기
매출액	107,663	113,750
매출원가	-86,315	-90,818
매출총이익	21,348	22,932
물류비	-1,169	-1,072
판매비와관리비	-20,708	-22,164
영업이익	-529	-304
기타영업외수익	918	383
기타영업외비용	-295	-811
금융이익	674	1,100
금융원가	-249	-25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19	109
법인세수익(비용)	-11	-254
보고기간 당기순이익	508	-145
기타포괄손익	-518	-1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518	-12
보험수리적손익	-664	-15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의 법인세	146	3
당기총포괄이익	-10	-157
주당이익		
계속영업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 (원)	20	-6
중단영업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 (원)	-	-

(3) 별도 자본변동표

< 별도 자본변동표 >

제 41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40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백만원)

과 목	자 본 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	총 계
		주식발행 초과금	기타 자본잉여금	자기주식	소 계		구성요소 매도가능 금융자산 평가손익	
2017.01.01(당기초)	13,160	93,797	6,804	-9,172	91,429	124,875	-	229,464
배당금지급	-	-	-	-	-	-3,553	-	-3,553
당기순이익	-	-	-	-	-	-146	-	-146
기타포괄손익	-	-	-	-	-	-12	-	-12
2017.12.31 기말	13,160	93,797	6,804	-9,172	91,429	121,164	-	225,753
2018.01.01(당기초)	13,160	93,797	6,804	-9,172	91,429	121,164	-	225,753
배당금지급	-	-	-	-	-	-3,045	-	-3,045
당기순이익	-	-	-	-	-	508	-	508
기타포괄손익	-	-	-	-	-	-518	-	-518
2018.12.31 기말	13,160	93,797	6,804	-9,172	91,429	118,109	-	222,698

(4) 별도 현금흐름표

< 별도 현금흐름표 >

제 41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40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41 기	제 40 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415	-4,630
당기순이익	508	-146
당기순이익 조정을 위한 가감	5,551	4,964
운전자본 변동	-4,875	-9,610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현금	231	16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138	65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134	-4,015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7,857	-8,580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20,877	29,578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효과	-42	-121
당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2,978	20,877

(5) 별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별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제 41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2019.03.22)

제 40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처분확정일 2018.03.23)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41 기	제 40 기
미처분이익잉여금	326	187
전기이월이익잉여금	336	344
당기순이익	508	-146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518	-11
임의적립금이입액	4,000	3,500
임의적립금	4,000	3,500
이익잉여금처분액	4,122	3,351
이익준비금	315	305
기타불입자본금 보전	-	-
기타적립금	-	-
배당금	3,807	3,046
주당배당금(률) :		
당기-보통주 : 150원(30%)		
전기-보통주 : 120원(24%)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04	336

(6)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회사의 개요

디와이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78년 10월 5일 설립되었으며, 1989년 5월 30일에당사의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4년 10월 24일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분할계획서에 따라 2014년 12월 1일을 분할일로 하여 투자사업 등을 영위하는 디와이 주식회사와 유압기계사업을 영위하는 디와이파워 주식회사, 자동차부품사업을 영위하는 디와이오토 주식회사로 각각 분할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4년 12월 1일자로 분할을 실시함에 따라 상호를 "동양기전주식회사"에서 "디와이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유가증권시장에 변경상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분할 이후 디와이파워 주식회사가 기발행한 보통주식수를 현물출자 대상주식으로 하여 공개매수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발행한 보통주식수는 5,696,033주이며, 그 결과 자본금이 2,848,016,5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의 자본금은 13,160백만원(26,320천주)이며, 당사의 주주는 조병호 39.39%와 기타법인 및 개인주주 60.6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 별도재무제표는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 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제정)

당사는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당기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동 기준서와 관련한 타 기준서의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1)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2) 금융자산의 손상 3)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당사는 동 기준서를 최초적용할 때 과거기간을 재작성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새로운 규정의 주요내용 및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고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갖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도 모두가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고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갖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기 이외의 모든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도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 중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채무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이 제거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을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기존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을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측정되는 채무상품은 손상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경영진은 최초적용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 검토하고 평가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함에 따라 당사의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던 채무상품 중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도 모두가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진 채무상품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채무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제거되거나 재분류될 때까지 평가손익누계액으로 계속 인식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던 만기보유금융자산이나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었던 금융자산 중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을 가진 금융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도 계속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던 금융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도 계속 당기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측정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에 따른 금융자산 분류의 변경내용은 주식 (5)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의 다른 재분류사항은 당사의 재무상태,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이나 총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와 달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라 금융자산의 최초인식시점 이후의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매 보고기간말 기대신용손실과 그 변동을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전에 반드시 신용사건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는 i)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ii) 리스채권, iii) 계약자산과 iv)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규정이 적용되는 대출약정 및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또는 금융자산의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간편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는 그 중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해서 동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금융상품 최초 인식일의 신용위험을 결정하고 최초적용일(2018년 1월 1일)의 신용위험과 비교함에 있어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최초적용일에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계약자산 및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손상을 검토하고 평가하였습니다.

(3)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에 따른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과 관련된 주요변경 중 하나는 발

행자의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입니다. 당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나,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변동 전체를 당기손익으로 표시했었습니다. 한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이 당사의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4) 일반위험회피회계

새로운 일반위험회피회계 모형은 세가지 위험회피회계 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회피회계에 적격한 거래유형에 더 많은 유연성을 도입하고 있으며, 위험회피회계에 적격한 위험회피수단의 유형과 비금융항목의 위험요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회피효과 평가와 관련된 규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간의 '경제적 관계' 원칙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위험회피효과의 소급적 평가는 더 이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사의 위험관리활동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공시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당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전진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최초적용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당사의 적격한 위험회피관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위험회피회계상으로도 적격하므로 위험회피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주요조건이 일치하므로 모든 위험회피관계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효과성 평가 규정상 계속적으로 유효합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위험회피관계로 지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당사는 전기와 동일하게 선도요소를 포함한 선도계약 전체의 공정가치 변동을 현금흐름위험회피 및 공정가치위험회피관계에서의 위험회피수단으로 계속 지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이 당사의 당기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활동에 대해서는 주석 32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와 제1039호에 따른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범주		장부금액	
	기준서 제 1039호	기준서 제 1109호	기준서 제 1039호	기준서 제 1109호
비상장주식(주식 9)	매도가능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1,050,033	1,050,033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제정)

당사는 당기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최초로 적용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동 기준서의 최초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인 2018년 1월 1일에 인식하도록 소급적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적용일에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만 동 기준서를 소급적용하며, 최초 적용일 전에 이루어진 모든 계약 변경에 대하여 계약을 소급하여 다시 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새로운 규정의 내용 및 당사가 적용한 회계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행의무의 식별

당사는 세차기, 크레인, 콘크리트펌프카, 굴프카의 제조 및 판매, 제품의 정비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1) 제품 및 부품 판매, (2) 추가적인 보증의 제공 및 (3) 기타 용역 등과 같이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거래가격의 배분

당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당사는 가장 합리적인 접근법을 적용하여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여 거래가격을 각 수행의무에 배분하고, 이행한 각 수행의무에 대해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도입에 따른 2018년 1월 1일의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개정)

동 개정사항은 1)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의 효과에 대한 회계처리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측정할 때의 고려방법과 동일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2) 기업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종업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 순결제특성이 없다고 가정할 때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으로 분류된다면 그 전부를 주식결제형으로 분류하는 것 그리고 3)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조건변경일에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여, 조건변경일에 제거된 부채의 장부금액과 인식된 자본금액의 차이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부동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또는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지)를 평가하고 사용의 변경이 발생하였다는 관측가능한 증거가 뒷받침되는 경우에 투자부동산으로(또는 투자부동산으로부터) 대체함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에 열거된 상황 이외의 상황도 사용에 변경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건설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도 사용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즉 사용의 변경이 완성된 자산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제정)

동 해석서는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예: 환급불가능한 보증금 또는 이연수익)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을 최초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거래일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 해석서는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석서에서는 만일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선지급이나 선수취에 대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미 외화로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는 대가에 대하여 동 해석서와 일관된 방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므로, 동 해석서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과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와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이와 유사한 기업은 각각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개별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고, 그러한 선택은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할 때 해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이 투자기업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등이종속기업에 적용한 공정가치 측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는 각각의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채택하지도 않고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도 아니기 때문에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상태표)

(당기)

(단위: 천원)

구분	변경전	조정사항	변경후
유동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050,033	1,050,033
매도가능금융자산	1,050,033	(1,050,033)	-
... ..,			
자산 총계	236,299,707	-	236,299,707
유동부채	-	-	-
이연수익	-	11,665	11,665
... ..,			
부채 총계	13,590,070	-	13,601,735
자본 총계	222,709,637	-	222,697,971
부채 및 자본총계	236,299,707	-	236,299,707

2) 기말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제정)

동 기준서에서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 모두에게 리스약정의 식별 및 회계처리를 위한 포괄적인 모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및 관련 해석서를 포함한 현행의 리스관련 규정을 대체하며, 당사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동 기준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동 기준서에서는 식별된 자산이 고객에 의해 통제되는지 여부에 기초하여 리스와 용역계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이용자가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분해야하는 규정은 삭제되고 그 대신 리스이용자는 단기리스 및 소액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해 사용권자산과 이에 따른 부채를 인식해야 하는 모형으로 대체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일부 예외 존재)에 리스부채의 재측정 금액

을 반영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최초인식 시점에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후속적으로 리스부채는 이자 및 리스료 뿐만 아니라 리스변경의 영향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는 운용리스료가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표시되어 왔으나 동 기준서에서는 리스료가 원금과 이자 부분으로 나누어져 각각 재무활동현금흐름 및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표시되므로 현금흐름의 분류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와는 대조적으로 동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의 리스제공자에 대한 회계규정을 대부분 그대로 적용하여 리스제공자에게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도록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기준서에서는 확대된 주식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는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에 있으나 당사가 이러한 분석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재무적 영향에 대한 합리적 추정치를 제공하는 것이 실무상 어렵습니다.

회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종속기업투자

종속기업은 당사가 재무 및 영업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모든 기업(특수목적기업을 포함)이며, 일반적으로는 과반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행사 또는 전환가능한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 여부 및 그 영향은 당사가 다른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데 고려됩니다.

당사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속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수익인식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에서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당사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당사의 활동별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당사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된 시점에 재화의 판매에 따른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행된 용역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의 성격에 따라, 작업수행정도의 조사, 총예상용역량 대비 현재까지 수행한 누적용역량의 비율, 총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율 등의 제공한 용역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3) 로열티수익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예상만기에 걸쳐 수취할 미래현금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4) 외화환산

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5) 차입원가

당사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정부보조금

당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보상하도록 의도된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당사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개정이 발생

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70에서 요구하는 배분 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8)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 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건물과 구축물에 대해서는 18~45년을, 그 외의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4년~24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당사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유·무형자산의 손상

유·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

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3)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 판매보증

판매보증충당부채는 관련 제품의 판매일에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파생상품

당사는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등의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으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5)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 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 재무제표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연결 대 차 대 조 표 (재 무 상 태 표) >

제 41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 40 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41 기	제 40 기
유동자산	412,880	409,039
현금및현금성자산	53,784	94,385
기타금융자산	32,110	14,525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86,240	174,405
기타자산	18,003	15,814
재고자산	121,776	109,675
당기법인세자산	967	235
비유동자산	336,889	330,886
기타금융자산	7,334	6,45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81	540
기타자산	28	204
유형자산	308,655	299,759
무형자산	10,193	10,634
순확정급여자산	-	405
이연법인세자산	10,198	12,893
자 산 총 계	749,769	739,925
유동부채	215,056	229,368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09,131	97,692
차입금	89,014	112,658
기타금융부채	-	-
기타부채	12,726	15,570
당기법인세부채	4,185	3,448
비유동부채	81,634	78,025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74	223
차입금	57,154	59,960

기타금융부채	37	-
기타비유동부채	1,696	-
총당부채	9,112	10,605
순확정급여부채	8,451	-
이연법인세부채	4,910	7,237
부 채 총 계	296,690	307,393
지배회사지분	346,968	340,955
자본금	13,160	13,160
기타불입자본	86,622	86,622
이익잉여금	255,956	248,595
기타자본구성요소	-8,770	-7,422
비지배지분	106,111	91,577
자 본 총 계	453,079	432,532
부 채 및 자 본 총 계	749,769	739,925

(2) 연결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손 익 계 산 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41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40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41 기	제 40 기
매출액	891,002	822,307
매출원가	-770,324	-702,891
매출총이익	120,678	119,416
물류비	-21,571	-19,032
판매비와관리비	-52,769	-54,956
영업이익	46,338	45,428
기타영업외수익	12,539	11,444
기타영업외비용	-10,129	-18,463
금융이익	4,862	16,430
금융원가	-11,772	-9,60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1,838	45,231
법인세비용(수익)	-11,931	-4,354
계속영업 당기순이익	29,907	40,877
당기순이익	29,907	40,877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13,203	20,789
비지배지분	16,704	20,088
기타포괄손익	-5,077	-8,053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없는 항목	-3,345	244
보험수리적손익	-4,271	32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법인세	926	-76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1,732	-8,297
해외사업환산손익	-1,732	-8,297
당기총포괄이익	24,830	32,824
총포괄이익의 귀속	24,830	32,824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8,510	13,267
비지배지분	16,320	19,557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에 대한 주당이익(원)	520	819
계속기업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원)	520	819
중단기업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원)	-	-

(3) 연결 자본변동표

< 연결 자본변동표 >

제 41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40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백만원)

과 목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 구성요소	비지배지분	총 계
		자본잉여금	자기주식	소계				
2017.01.01(당기초)	13,160	95,793	-9,172	86,621	230,679	344	73,282	404,086
배당금의 지급	-	-	-	-	-3,554	-	-824	-4,378
당기순이익	-	-	-	-	20,789	-	20,088	40,877
보험수리적손익	-	-	-	-	681	-	-437	244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7,766	-531	-8,297
2017.12.31 기말	13,160	95,793	-9,172	86,621	248,595	-7,422	91,578	432,532
2018.01.01(당기초)	13,160	95,793	-9,172	86,621	248,595	-7,422	91,578	432,532
배당금의 지급	-	-	-	-	-3,046	-	-1,238	-4,283
당기순이익	-	-	-	-	13,203	-	16,704	29,907
보험수리적손익	-	-	-	-	-2,796	-	-549	-3,345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1,348	-384	-1,732
2018.12.31 기말	13,160	95,793	-9,172	86,622	255,956	-8,770	106,111	453,079

(4) 연결 현금흐름표

< 연결 현금흐름표 >

제 41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40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41 기	제 40 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3,069	25,007
당기순이익	29,907	40,877

당기순이익 조정을 위한 가감	59,919	42,744
운전자본 변동	-22,120	-43,421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현금	-14,637	-15,193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0,569	-38,807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3,440	-12,006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40,940	-25,807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94,385	123,788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효과	339	-3,596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53,784	94,385

(5) 연결 현금흐름표에 대한 주석

1. 지배기업의 개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디와이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78년 10월 5일 설립되었으며, 1989년 5월30일에 당사의 주식을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는 투자사업 및 산업기계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는 익산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국내 4개 종속기업과 미국 등 8개의 해외종속기업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4년 10월 24일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분할계획서에 따라 2014년 12월 1일을 분할일로 하여 투자사업 등을 영위하는 디와이 주식회사와 유압기계사업을 영위하는 디와이과워 주식회사, 자동차부품사업을 영위하는 디와이오토 주식회사로 각각 분할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4년 12월 1일자로 분할을 실시함에 따라 상호를 "동양기전주식회사"에서 "디와이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유가증권시장에 변경상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분할 이후 디와이과워 주식회사가 기발행한 보통주식수를 현물출자 대상주식으로 하여 공개매수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발행한 보통주식수는 5,696천주(자본금 2,848백만원)입니다.

당기말 현재의 자본금은 13,160백만원(26,320천주)이며, 당사의 주주는 조병호 39.39%와 기타법인 및 개인주주 60.6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 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제정)

당사는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당기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동 기준서와 관련한 타 기준서의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1)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2) 금융자산의 손상 3)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당사는 동 기준서를 최초적용할 때 과거기간을 재작성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새로운 규정의 주요내용 및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고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갖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도 모두가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고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갖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기 이외의 모든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도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 중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채무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이 제거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을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기존에 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된 누적손익을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합니다.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측정되는 채무상품은 손상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경영진은 최초적용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 검토하고 평가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함에 따라 당사의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던 채무상품 중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도 모두가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진 채무상품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채무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제거되거나 재분류될 때까지 평가손익누계액으로 계속 인식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던 만기보유금융자산이나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었던 금융자산 중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현금흐름을 가진 금융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도 계속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던 금융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도 계속 당기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측정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에 따른 금융자산 분류의 변경내용은 주석 (5)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의 다른 재분류사항은 당사의 재무상태,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이나 총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나.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와 달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라 금융자산의 최초인식시점 이후의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매 보고기간말 기대신용손실과 그 변동을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전에 반드시 신용사건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는 i)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ii)리스채권, iii) 계약자산과 iv)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규정이 적용되는 대출약정 및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또는 금융자산의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간편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는 그 중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 대해서 동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금융상품 최초 인식일의 신용위험을 결정하고 최초적용일(2018년 1월 1일)의 신용위험과 비교함에 있어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최초적용일에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및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손상을 검토하고 평가하였습니다.

다.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에 따른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과 관련된 주요변경 중 하나는 발행자의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입니다. 당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나,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변동 전체를 당기손익으로 표시했었습니다.

한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이 당사의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에 미치는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라. 일반위험회피회계

새로운 일반위험회피회계 모형은 세가지 위험회피회계 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회피회계에 적절한 거래유형에 더 많은 유연성을 도입하고 있으며, 위험회피회계에 적절한 위험회피수단의 유형과 비금융항목의 위험요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회피효과 평가와 관련된 규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간의 '경제적 관계' 원칙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위험회피효과의 소급적 평가는 더 이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사의 위험관리활동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공시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당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전진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최초적용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당사의 적절한 위험회피관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위험회피회계상으로도 적격하므로 위험회피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위험회피수단과 위

협회피대상항목의 주요조건이 일치하므로 모든 위험회피관계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효과성 평가 규정상 계속적으로 유효합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위험회피관계로 지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당사는 전기와 동일하게 선도요소를 포함한 선도계약 전체의 공정가치 변동을 현금흐름위험회피 및 공정가치위험회피관계에서의 위험회피수단으로 계속 지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이 연결실체의 당기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연결실체의 위험관리활동에 대해서는 주석 33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최초적용일인 2018년 1월 1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와 제1039호에 따른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범주		장부금액		
	기준서 제 1039호	기준서 제 1109호	기준서 제 1039호	기준서 제 1109호에 따른 추가 손실충당금 인 식액	기준서 제 1109호
비상장주식(주석 9)	매도가능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195,891	-	1,195,891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제정)

연결실체는 당기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최초로 적용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동 기준서의 최초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인 2018년1월1일에 인식하도록 소급적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적용일에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만 동 기준서를 소급적용하며, 최초 적용일 전에 이루어진 모든 계약 변경에 대하여 계약을 소급하여 다시 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새로운 규정의 내용 및 당사가 적용한 회계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실체는 세차기, 크레인, 콘크리트펌프카, 골프카, 유공압기기, 유공압기계 및 자동차 전장부품의 제조 및 판매, 제품의 정비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1) 제품 및 부품 판매, (2) 추가적인 보증의 제공 및 (3) 기타 용역 등과 같이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거래가격의 배분

연결실체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연결실체는 가장 합리적인 접근법을 적용하여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여 거래가격을 각 수행의무에 배분하고, 이행한 각 수행의무에 대해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도입에 따른 2018년 1월 1일의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개정)

동 개정사항은 1)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의 효과에 대한 회계처리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측정할 때의 고려방법과 동일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2) 기업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종업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 순결제특성이 없다고 가정할 때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으로 분류된다면 그 전부를 주식결제형으로 분류하는 것 그리고 3)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조건변경일에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여, 조건변경일에 제거된 부채의 장부금액과 인식된 자본금액의 차이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부동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또는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지)를 평가하고 사용의 변경이 발생하였다는 관측가능한 증거가 뒷받침되는 경우에 투자부동산으로(또는 투자부동산으로부터) 대체함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에 열거된 상황 이외의 상황도 사용에 변경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건설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도 사용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즉 사용의 변경이 완성된 자산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제정)

동 해석서는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예: 환급불가능한 보증금 또는 이연수익)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을 최초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거래일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 해석서는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석서에서는 만일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선지급이나 선수취에 대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미 외화로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는 대가에 대하여 동 해석서와 일관된 방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므로, 동 해석서가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와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이와 유사한 기업은 각각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개별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고, 그러한 선택은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할 때 해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이 투자기업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등이 종속기업에 적용한 공정가치 측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는 각각의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채택하지도 않고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도 아니기 때문에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1월 1일			당기말
	변경전	조정사항	변경후	
비유동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1,195,891	(1,195,891)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195,891	1,195,891	1,195,891
유동부채				
이연수익	-	11,665	11,665	11,665

2) 제정·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제정)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적용에 따른 일반적인 영향

동 기준서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 모두에게 리스약정의 식별 및 회계처리를 위한 포괄적인 모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리스이용자는 표시되는 각 과거 보고기간에 소급적용하는 방법(완전소급법)과 최초 적용일에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인식하도록 소급적용하는 방법(수정소급법) 중 하나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최초 적용일인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수정소급법을 적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최초 적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적용의 누적효과가 최초 적용일의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에서 조정되며,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 '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다만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리스의 경우 동 기준서의 예외규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스이용자는 실무적 간편법으로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회계처리와 유의적으로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나) 리스의 식별

당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며 최초 적용일에도 이 기준서에 따라 계약이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식별합니다. 다만 당사는 최초 적용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모든 계약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경된 리스의 정의는 주로 통제모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식별되는 자산이 고객에 의해 통제되는지 여부에 기초하여 리스계약과 용역계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다음 권리를 모두 갖는 경우에 사용 통제권이 고객에게 이전됩니다.

-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

-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

당사는 동 기준서상 변경된 리스의 정의가 리스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계약의 범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a. 운용리스

동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지 않았던 운용리스의 회계처리가 변경되며 동 기준서의 최초 적용일에 당사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 최초인식시점에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 측정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인식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리스부채의 이자비용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

- 현금지급액을 현금흐름표에서 원금(재무활동)과 이자(영업활동)로 구분하여 표시

동 기준서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손실부담계약에 대해 충당부채를 인식하도록 하는 종전 규정을 대체합니다.

당사는 동 기준서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예: 개인 컴퓨터, 소형 사무용 가구)에 대해 리스료를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 이러한 변경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b. 금융리스

금융리스에서의 자산과 관련하여 동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의 주된 차이는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잔존가치보증의 측정에서 발생합니다. 동 기준서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 요구되었던 최대보증액이 아니라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하여 인식합니다. 최초 적용일에 당사는 유형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리스자산을 사용권자산의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 이러한 변경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동 기준서 하에서도 리스제공자는 계속적으로 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두 유형의 리스를 다르게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나 동 기준서에서는 리스제공자가 리스자산에서 계속 보유하는 모든 권리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과 관련한 공시사항이 변경되고 확대되었습니다.

동 기준서에 따르면 중간리스제공자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하며, 전대리스를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자산에 따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는 기초자산에 따라 분류).

당사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 이러한 변경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또는 그 종속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기업(특수목적기업 포함)의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1) 피투자자에 대한 힘, 2)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3) 투자자의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할 때 지배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지배력의 3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기에 충분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피투자자에게 대한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보유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
- 연결실체, 다른 의결권 보유자 또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과거 주총에서의 의결양상을 포함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른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

당기 중 취득 또는 처분한 종속기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취득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또는 처분이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됩니다.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최초 인식한 금액에 취득이후 자본 변동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비례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소유지분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i) 수취한 대가 및 보유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액과 (ii)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의 차이금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전에 인식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즉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하거나 적절한 경우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최초 인식시의 원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연결실체가 발행하였거나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교환일)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1) 공정가치나 2)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득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연결실체의 이전대가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란 '조정기간' (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조건부 대가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이후보고일에 재측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기업회계기준 제 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이나 기업회계기준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이후 보고일에 재측정하고 적절한 경우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취득일(즉 연결실체가 지배력을 획득한 날)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실체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위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다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란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하며,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 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실은 연결실체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지고 있거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 중 연결실체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영업권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투자자산의 일부로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해당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기존의 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이 때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처분손익에 포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되는 경우,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투자가 공동기업투자가 되거나 반대로 공동기업투자가 관계기업투자로 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연결실체와 관련이 없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연결실체의 연

결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5)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원가에서 누적손상차손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연결실체의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 경우,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직접 인식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할 경우 관련 영업권 금액은 처분손익의 결정에 포함됩니다.

(6) 수익인식

연결실체는 고객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에서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연결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결실체의 활동별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연결실체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된 시점에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행된 용역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의 성격에 따라, 작업수행정도의 조사, 총예상용역량 대비 현재까지 수행한 누적용역량의 비율, 총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율 등의 제공한 용역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3) 로열티수익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예상만기에 걸쳐 수취할 미래현금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7) 외화환산

각 연결대상기업들의 개별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개별기업들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연결실체의 기능통화이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결실체에 포함된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의 환율을 사용하여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당해 기간 동안 중요하게 변동하여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손익항목은 당해 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적절한 경우 비지배지분에 배분)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즉 연결실체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분 전부의 처분,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처분,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처분,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관계기업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처분),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 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그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제거하지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일부 처분의 경우,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 외의 모든 일부 처분의 경우(즉 중대한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이나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감소)에는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로 처리하고 보고기간말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환차이는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차입원가

연결실체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 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정부보조금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보상하도록 의도된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연결실체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퇴직급여비용과 해고비용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연결실체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제1019호 문단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연결실체는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11)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실체의 당기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연결재무제표 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12)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건물과 구축물에 대해서는 18~45년을, 그 외의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4년~24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연결실체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유·무형자산의 손상

유·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

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6)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 판매보증

판매보증충당부채는 관련 제품의 판매일에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파생상품

연결실체는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등의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으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 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8)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실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채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 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제 41 기	제 40 기
현금배당	1주당 배당금	150원	120원
	배당금총액	3,807백만원	3,046백만원
	액면배당률	30%	24%
	시가배당률	2.6%	1.9%

(*1) 제41기 현금배당은 제41기 정기주주총회(2019.03.22. 예정) 승인 사안임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현행	개정(안)	비고
제9조 (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9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상장사 주식 등 전자등록 의무화에 따른 조문 변경
제12조 (명의개서대리인)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u>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u>	제12조 (명의개서대리인)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u>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u>	주식 등 전자등록에 따른 조문 변경
제13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2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3조 (삭제)	주식 등 전자등록에 따른 조문 삭제
제14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u>3월</u>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 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u>3개월</u>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 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조문 명확화
(신설)	제16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주식 등 전자등록에 따른 조문 신설
제17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7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주식 등 전자등록에 따른 조문 변경
제18조 (소집기간)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u>3월</u>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8조 (소집기간)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u>3개월</u>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조문 명확화

<p>제30조 (이사 및 감사의 수) (신설)</p>	<p>제30조 (이사 및 감사의 수) ③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p>	<p>상법 적용에 따른 조문 신설</p>
<p>제34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할 수 있다.</p>	<p>제34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등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p>	<p>조문 명확화</p>
<p>제35조 (이사의 직무) ①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는 회사를 각자 대표하고 회사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담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35조 (이사의 직무) ①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일 때는 각자 대표한다.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담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조문 명확화</p>
<p>제38조 (이사회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인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38조 (이사회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하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소집하는 이사는 회일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상법 적용에 따른 조문 변경</p>
<p>제44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이 회사는 대표이사(사장)은 정기주주총회일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사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사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p>	<p>제44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일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좌동)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p>	<p>조문 명확화</p>
<p>제44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①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공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p>	<p>제44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①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공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p>	<p>외부감사법 개정 따른 조문 변경</p>

부칙 (신설)	부칙	개정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의2 및 제17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한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그전까지는 종전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기타 참고사항

-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조 병 호	1946.04.05	X	본 인	이사회
김 지 현	1959.08.23	X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이 형 모	1946.02.11	O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총 (3)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임기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조 병 호	(현) 디와이 대표이사	2년	서울대 기계공학과 졸업 대우중공업 근무	해당사항 없음
김 지 현	(현) 디와이 사장	2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대우 근무	해당사항 없음
이 형 모	(현) 재외동포신문 대표	2년	고려대 법학과 졸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근무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당 기	전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4명 (1명)	4명 (1명)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900백만원	750백만원
---------------	--------	--------

(*1) 2018.05.25 이근모 사외이사는 중도사임하였으며, 최초 도래하는 주주총회일에 사외이사 신규선임 예정임.

※ 기타 참고사항

-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당 기	전 기
감사의 수	1명	1명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50백만원	15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 . 해당사항 없음

※ 참고사항

- . 주주총회 예정일 : 2019. 3. 22. (금)
 - .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사유 : 연결대상 국내 및 해외 자회사들의 결산 일정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당초 계획한 날짜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